

#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3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관광정책과장)

#### 가. 제안이유

- 평창군 체류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위치, 적용범위(제1조 ~ 제3조)
- 운영 및 운영시간(안 제4조 ~ 제5조)
- 이용자 범위, 신청 및 이용, 이용료 등(안 제6조 ~ 제10조)

- 이용제한, 손해배상(안 제11조 ~ 제12조)
- 관리·운영의 위탁 및 준용(안 제13조 ~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 요지: 「없음」

### 6. 심사 결과: 「수정가결」

### 7. 수정안 요지

- 안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에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 9.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1부.  
 2.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1부.  
 3.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4.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붙임 1]

##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550호 관련
----------	------------

제안연월일 : 2026. 3. 13.

제안자 : 조례특위위원장

### 1. 수정이유

- 안 제9조제2항제6호에서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이용료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로 규정하였는데,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법령상 연령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어 별도의 “만” 표기는 불필요한 표현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며,
- 현행 문구는 자녀 모두가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다자녀가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다자녀가정임에도 일부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는 경우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 운영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가구”는 일반적으로 세대 구성 단위를 일컬으며 행정적·통계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반면, 실제 양육 및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책 취지를 반영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어  
“가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2. 수정내용

- 안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에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으로 수정한다.

##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생 략)</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6. <u>만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u></p> <p>7. ~ 11.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u></p> <p>7. ~ 11.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6. 03. 03.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 2. 제안이유

- 평창군 체류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 및 위치, 적용범위(제1조 ~ 제3조)
- 운영 및 운영시간(안 제4조 ~ 제5조)
- 이용자 범위, 신청 및 이용, 이용료 등(안 제6조 ~ 제10조)

- 이용제한, 손해배상(안 제11조 ~ 제12조)
- 관리·운영의 위탁 및 준용(안 제13조 ~ 제14조)

## 4. 검토의견

### 가. 관련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하며,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나. 입법의 취지

-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4조에서는 위케이션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5조에서는 주요시설의 운영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워케이션센터 이용자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신청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 안 제8조와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각각 이용료와 이용료의 감면사항, 이용료의 반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이용제한 사항에 대해 안 제12조에서는 이용자가 고의 과실로 시설물 및 기타 비품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3조에서는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 외 워케이션센터의 띄어쓰기 통일, 별지 서식 오타(주수사항 →준수사항) 수정

## 5. 종합검토의견

- 문화체육관광부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23~ '27) 중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실현을 전략 과제로 삼고,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평창군도

근무와 휴양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인 워케이션의 수요에 맞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 계방산 워케이션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체류형 관광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4 전략과제4 : 더 자주 더 오래 머무는 지역관광시대 실현

- (체류형관광 육성)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국민 체감형 지역관광콘텐츠를 개발·확산하여 지역 체류형 관광 활성화
  - (야간관광) 체류 연장 촉진을 위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및 지역 생활 체험형 관광으로 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 '22년~'24년 야간관광 특화도시 10개소 선정 완료 및 대구석 야간관광 테마페이지 오픈(12월)
  - (워케이션) 워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체류형 지역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워케이션 시설조성·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워케이션 인프라 구축
    - \* 워케이션 시설조성(6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7개 광역, 8,247명 참여)
  - (관광주민증) 인구감소지역 대상 여행할인 혜택 제공으로 재방문 유도 및 지역 유대감 강화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 추진
    - \* '23년 15개→'24년 34개 지역(확대), 운영지역 정주민구(193만명)의 213%인 411만명 발급
  - (코리아둘레길) 동·서·남해안과 DMZ를 잇는 전 구간 완성 계기 걷기여행주간 운영 및 안내체계 고도화
    - \* 코리아둘레길 완보자 '23년 259천명 → '24년 291천명으로 12.4% 증가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 2025, <https://www.mcst.go.kr>

##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2(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육성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8. 8.]

#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559
----------	-----

제출연월일 : 2026. 3.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평창군의 관광생활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목적 및 위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 운영 및 운영시간(안 제4조 ~ 제5조)
- 이용자 범위, 신청 및 이용, 이용료 등(안 제6조 ~ 제10조)
- 이용제한, 손해배상(안 제11조 ~ 안 제12조)
- 관리·운영의 위탁 및 준용(안 제13조 ~ 안 제14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군비(비용추계서 참조)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6. 1. 16. ~ 2026.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6-134호, 관광정책과-1048(2026. 1. 16.)호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223(2026. 1. 16.)호]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예산과-1223(2026. 1. 16.)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2541(2026. 1. 16.)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2743(2026. 2. 11.)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3436(2026. 2. 25.)호]

##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 센터(이하 “위케이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76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위케이션 센터 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1. 숙박동
2. 공유오피스동(공유사무공간)

**제4조(위케이션 시설의 운영)** 군수는 위케이션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위케이션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
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위케이션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사항

**제5조(운영시간)** ① 주요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동: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
2. 공유오피스동(공용사무공간): 09:00부터 18:00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위케이션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범위)** 위케이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인 및 사업자
2. 프리랜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신청 및 이용)** ① 위케이션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③ 군수는 내·외국인 단체 유치, 위케이션 홍보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① 위케이션 센터 이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평창군에서 주관하는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위케이션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6.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둘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7.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용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8.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9. 평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10.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

11.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이용료는 중복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이용 조건 등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① 군수는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로 시설물 및 기타 비품을 훼손한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위케이션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위케이션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군 위케이션 센터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명	비수기		성수기	비고
	평일	주말, 공휴일		
숙박동(26.56㎡)	70,000원	100,000원	100,000원	1일 / 1실
시설명	대상		이용료	비고
공유오피스동 (개인좌석)	숙박동 이용객이 아닌 일반 이용자		5,000원	1인 / 1일

**비고**

1. “성수기”와 “주말”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배상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중 숙박업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나. 주말 :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前日) 숙박

2. “1일”의 시간 기준은 입실일(check-in) 14시부터 다음일(check-out) 11시 까지이며, 퇴실시간을 초과할 때의 이용료 추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초과시간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추가 이용료	10,000원	20,000원	1일 이용료

3. 숙박동 기준정원(1인)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만 6세 이하는 제외) 10,000원을 추가한다.

4. 이용료의 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신분증 또는 서류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 관계 법령 발췌

## □ 관광진흥법

### 제48조의12(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과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휴양연계관광산업(지역관광과 기업의 일·휴양연계제도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공간, 체류비용의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② 생략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생략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③ 생략
-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⑤~⑥ 생략
-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⑧ 생략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⑩ 생략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① 법 제27조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②~④ 생략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 ①~② 생략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④ 생략

**□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서비스업 부문-숙박 관련)

숙박업 (2-1)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b>1) 성수기(하 7.15~8.24, 동 12.20~2.20) 주중</b>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손해배상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적용함. •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 주말: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다만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 계약취소 가능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전까지로 한정함

숙박업 (2-1)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b>2) 성수기(하 7.15~8.24, 동 12.20~2.20) 주말</b>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계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 손해배상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적용함. •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 12.20~2.20  *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 다만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칠 경우, 계약취소 가능시간은 사용예정일 0시 전까지로 한정함

숙박업 (2-2)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b>3) 비수기 주중</b>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b>4) 비수기 주말</b>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b>5)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 당일 계약 취소</b>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b>6)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b>	○ 계약금 환급	*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지진포함)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

##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명: 평창군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관련조문: 조례(안) 제4조(위케이션 시설의 운영)

다. 비용발생 요인: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등 비용 필요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계방산 위케이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은 자체재원(군비)으로 조달
- 숙박동 및 공유오피스동 이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 발생

나. 추계 결과

○ 세입(연간기준)

구분	내용	산출기초	금 액
합 계			19,215천원
위케이션센터 이용료	숙박동(26.56㎡)	평균숙박료 85,000원 x 3동 x 73일	18,615천원
	공유오피스동	1일 이용료 5,000원 x 연 120명	600천원

※ 숙박동: 객실수 3동, 이용률 연20% 반영

※ 공유오피스동: 최대 수용인원 24명, 숙박동 이용객이 아닌 일반이용자 대상으로 매월 이용자 수 10명 반영

○ 세출: 98,200천원

구분	내용	산출기초	금 액
합 계			98,200천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청소 및 시설관리 32,000천원 x 1명	32,000천원
관리비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운영소모품 구입 3,000천원 정수기 등 임차료 1,200천원 공공요금 12,000천원	16,200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위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비 50,000천원	50,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군비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연락처	(033) 330 - 22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9,607	19,215	19,215	19,215	19,215	86,467
이용료 (숙박동 및 공유오피스동)	9,607	19,215	19,215	19,215	19,215	86,467
세 출	74,100	98,200	98,200	98,200	98,200	466,900
관리 및 운영비	74,100	98,200	98,200	98,200	98,200	466,900
재원 조달	74,100	98,200	98,200	98,200	98,200	466,9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4,100	98,200	98,200	98,200	466,9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74,100	98,200	98,200	98,200	466,9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